

<정책토론회>

청주도시가스 요금책정, 어떻게 할 것인가?

007.6.25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정책토론회>

청주도시가스 요금책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및 목적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와 이에따른 시행령과 규칙에 의거 매년 1차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책정한다. 충북은 현재 도시가스공급업체로부터 요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도정조정위원회 또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는 공공재로써 현대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독점적 판매체계는 도시가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서민생활의 경제적 고려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판매에서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한 것이 밝혀지는가 하면 온압차에 의한 팽창된 도시가스로 인한 부당이득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부적정 판정과 함께 부당요금에 대한 요금반영을 권고받았음에도 공급회사는 물론이고 자치단체도 마땅한 대책 없이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도시가스는 2006년 기준 광역권의 평균공급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84.09원/m³)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사용 가스 사용자의 경우 기본요금이 타 광역권보다 무려 6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가스의 요금산정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가스가 법령의 재정 목적인 “사용자의 이익보호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여 도시가스가 현대 도시생활에서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충북도의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일 시 : 2007년 6월 25일 (월) 14:00 ~ 16:00

■ 장 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 주 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주 관 :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 내 용

△ 사 회 (윤상덕 건양대 겸임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

△ 발 제

- 소비자 입장에서 본 도시가스의 전반적 문제(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도시가스 요금 구성의 문제(윤여일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 토 론

- 김 태 완 (충청북도 자원관리팀 도시가스담당)
- 황 대 현 (전국아파트연합회 청주시지회 회장)
- 유 정 (청주 아파트관리소장 협의회 부회장)
- 문 창 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팀장)
- 김 례 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청주도시가스 요금책정,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가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6.25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김 성 천**

도시가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¹⁾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1. 도시가스서비스의 성격

도시가스서비스는 전기, 상수도 등과 같이 소비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에너지서비스이자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사회내의 편익을 배분하게 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공급하지만 그 생산은 민간부문, 공기업, 제3섹터 등의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등이 맡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모두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물품의 성격 및 소비의 경합성 정도에 따라 시장재, 공동소유재, 요금재, 집합재 등으로 구분되는데, 도시가스서비스는 배제 자체는 가능하나, 비경합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재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서비스는 현행 요금재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기업적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 요금재 공공서비스 중 우편은 국가에서,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철도·고속도로, 전기는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서비스는 관련부처 및 기관도 다양하여 도시가스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련부처로는 산업자원부가 관련되지만 각 시도별로 존재하는 도시가스공급회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1) 이 글은 개인적 견해임.

되며,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되어 있다.

현재 도시가스서비스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도시가스공급규정 표준모델안”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각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 도시가스관련 법제의 현황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즉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

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21조). 즉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시가스공급규정

도시가스공급규정 표준모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의무)

제3조(적용)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7조(송납의 의무)

제8조(계약의 준수)

제9조(해약)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제13조(가스계량기)

제14조(공사비)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제16조(계량의 단위)

제17조(사용량의 산정)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제20조(요금의 수납)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제23조(이의 신청)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제25조 (보증금)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제28조(공급중지)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2] 시설분담금

[별표3] 가스요금표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별표5] 해제수수료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정경제부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에 가스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스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품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가스서비스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 가스요금 이종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종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 도시가스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현황 및 내용

최근 도시가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나면 이에 둘러싼 소비자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도시가스의 안전문제와 거래적정화문제이다. 이종 후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및 피해구제로 접수되고 있다.

1) 한국소비자원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처리된 도시가스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현황을 보면 상담이 총 2,600건이고, 피해구제건수는 117건이다. 전기, 상수도 등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 상담건수와 피해구제건수는 많다.

<표2>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의 현황(한국소비자원)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상담	674	257	357	380	486	446	2,600
피해구제	13	21	12	13	31	27	117

도시가스서비스관련 상담청구이유별로 보면 가격.요금에 관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당행위 관련 비율, 제도 관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보면 옆집 또는 앞집 등과 계량기 구분을 잘못하여 도시가스요금이 잘못된 청구된 것과 관련된 피해, 계량기 고장과 관련된 요금부과의 문제, 사용요금 과다 부과, 부가가치세의 부과 문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연체요금 부과 문제, 전출자 또는 임차인의 요금연체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의 예고없는 중단 등이 주요 유형이고, 부당행위와 관련하여는 시설연결비용, 계량기 교체비용, 가스배관의 부당청구 및 신뢰성 여부문제 등이다.

제도,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계량기 용량차이에 따른 가스공급의 연속성 문제, 체납요금 분할납입 가능 문제, 가스요금 신용카드납부 거절문제, 연체요율의 문제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담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타기관알선 및 업체상담실을 안내해 주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법.제도를 설명하거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구제청구된 것도 가격.요금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중 청구 및 과대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의 중재요청건, 계량기 연결이 잘못되어(계량기가 뒤바뀌어) 과다 납부한 가스사용료 환급건, 도시가스 사용요금 체납금 청구시 연체료 조정 요구건 등이다. 계량기가 잘못 연결된 경우, 청구

인 소비자가 요금을 과다 납부하였으나 옆집 소비자가 요금을 미납하여 도시가스 회사가 과다 납부한 소비자의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등 선의의 피해 사례도 있다. 또한 경매를 제외하고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을 현 거주자가 승계해야 하나, 소유권 이전 시기와 실제 이사시기와의 차이로 인해 이전 거주자가 잠적해 버린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도 있다.

2) 경실련

경실련이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체계개선운동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된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추가이익을 얻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영업비밀과 경영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산출근거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요금산정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추정비용과 실제 소요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가 모두 부실하다.

셋째,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이 존재한다. 도시가스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함에도 아무런 노력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1999년 감사원 지적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들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만을 반복하고 있다.

4. 도시가스서비스문제의 개선방안

실제 도시가스서비스의 소비자문제는 개개의 소비자가 도시가스서비스에서 느끼는 단순한 불만 및 피해에 국한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서비스의 요금, 품질, 안전성 및 거래조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잠재욕구를

포괄한다. 나아가 도시가스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생산·공급·이용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 과정상의 수용태도는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가스서비스 경영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서비스의 소비자문제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유사하게 소비자-도시가스공급업자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의 도시가스서비스관리정책 및 경제정책과 각종 법제도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정치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시가스서비스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참여를 활발히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사후적인 소비자정책으로서 이미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조정하는 소비자피해 상담 및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서비스의 소비자문제는 공공서비스로서의 경영 및 관리 정책, 국가 경제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참여, 소비자피해구제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중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도시가스서비스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금결정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 도시가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심의하도록 하여 중간사결정 또는 검증과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보낼 뿐이다. 이에 이러한 위원회

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요금결정과정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의 결정과정에서 도시가스요금의 지급자인 소비자가 요금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미흡하다. 다시 말해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섭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고 소비자는 단지 요금결정에 다른 반사적 이익·불이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요금만을 전담하는 공공요금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비자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셋째, 도시가스요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소비자단체는 공공요금에 관한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요금변경시 원가와 실적의 비교·분석에 관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요금결정과정 및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으로는 요금 등에 관한 기초적 정보, 사업효율화에 관한 정보, 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법령 등에 의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요금조정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요금결정방식을 법정화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요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결정방식 및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가스요금체계의 다양화·탄력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에 대한 요금체계에서 과부하요금제를 확대하거나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도입이나 이외에도 시간대, 요일 등에 따른 다양한 요금의 설

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시가스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제정·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도시가스관련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량기 검침착오, 계산착오 등에 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 공기업서비스체계화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김성천, 공공요금결정제도와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송순영, 요금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경실련 2006년 :창립 17주년 활동자료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

청주도시가스 요금산정의 문제점

2007.6.25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장 세무사 **윤 여 일**

청주도시가스 요금산정의 문제점

윤 여 일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세무사)

들어가며

도시가스는 이미 우리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은 사용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그 공급방식은 적정하지 등등.....

특히, 청주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를 정작 소비하고 있는 청주지역 시민들은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도시가스요금의 책정이나 공급방식 등이 적절한지,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 산정의 문제

먼저, 현재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요금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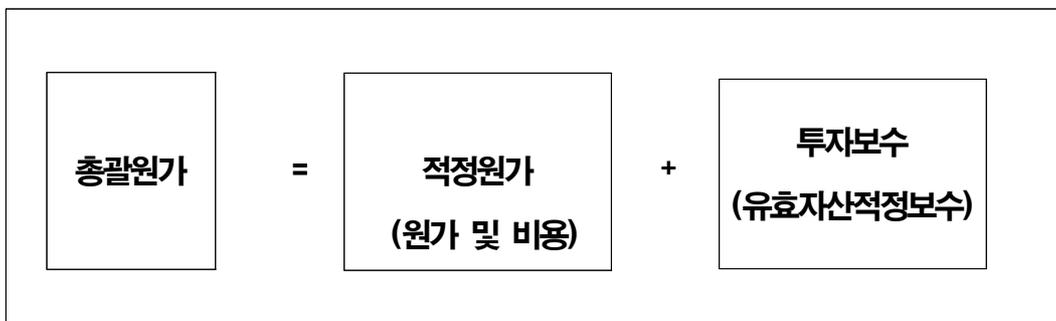
도시가스요금: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

기본요금: 가스사용량과 구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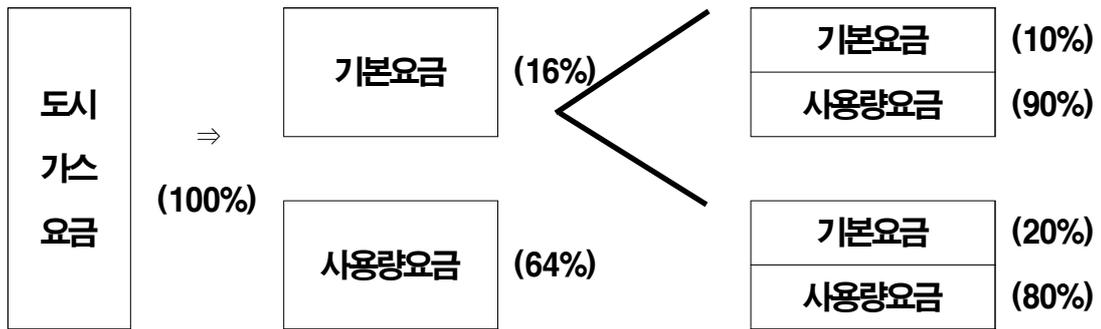
사용량요금: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

	구분	정의 및 구성요소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용)	기본요금	- 가스사용량과 구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월 청구되는 요금으로 가스사용 용도에 따라 기본요금이 다르게(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산정 됩니다.
	사용량 요금	- 가스사용량 요금은 도시가스 사용량(가스계량기 검침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기본요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량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용량에 사용용도별 가스요금이 적용되어 산정 됩니다.

< 현재 요금 산정 방식 >



$$\text{단위당 공급비용} = \text{총괄원가} / \text{판매량}$$



가스 사용량 요금	=	[도매 요금 + 용도별 공급비용]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	실제 가스 사용량
-----------------	---	---	---	-----------------

지금까지 알아본 현재의 도시가스요금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원가와 사용량요금에 해당하는 원가의 미구분

기본요금이란 그 성질상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요금이다.

이렇듯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도시가스의 사용을 많이 하든 안하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즉 기본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고정비용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하고, 이렇게 산정된 원

가는 가스가 공급되는 세대수로 나누어서 기본요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일정지역의 100세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1억원(20년수명)의 공급관이 설치되었다면, 20년간 매월 416,666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세대당 4,166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량으로 나누어 사용량 요금으로 부과하면 될 것이다.

이 기본비용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이 기본요금의 산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요금이 실제보다 높게 부과된다면, 소비자는 도시가스의 사용량과는 전혀 무관하게 매달 높은 기본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의 요금산정방식을 보면 기본고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원가주의에 의해 총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급비용(도시가스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일정비율에 의해 안분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또한, 현재 취사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투입되는 기본 고정비용은 다른용도(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비슷하게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취사용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요금은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량이 적다고 기본요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주장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취사용에 기본 고정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따라서 취사용을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만큼의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단위당 공급비용을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안분하는 기준의 불명확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본요금의 산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요금 산정체계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가, 즉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급비용(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단위당 공급원가에 적정투자보수(이윤)를 더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 기본비용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에 의해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단위당 공급비용에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원가와 사용량요금에 해당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총괄주의에 의한 원가산정 방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사용량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위당 공급비용을 일정비율(기본요금 16%, 사용량요금 84%)로 안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분하는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는 결국 기본요금 배분비율을 높이면 소비자는 가스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의 가스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단위당 공급비용을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안분하는 근거

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용도별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차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단위당 공급비용(도시가스요금)을 먼저 일정비율에 의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안분하고, 이를 다시 용도별로 일정비율에 의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또다시 안분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처럼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인분된 것을 이를 다시 용도별로 다르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배분하는 배분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다른 용도의 도시가스에 비해 취사용에 배분비율을 더 높게 되면, 이는 결국 다른 용도의 소비자보다 취사용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논리대로 요금산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용도별로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안분하는 계산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용량 요금이 용도별로 달리 산정되는 이유의 불명확

기본요금은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똑같은 고정 기본비용이 투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취사용의 경우 기본요금을 다른 용도의 사용자보다 더 부담하는 것은 논리에 맞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용량요금은 이와 다르다.

현재, 단위당 가스사용량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가 산정한 용도별 공급비용을 더해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이 있기 때

문에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량에 부과되는 요금이 다른 것은 도시가스회사가 산정한 용도별공급비용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사용량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본비용을 제외하고, 사용량과 관련있이 발생하는 비용에 의해 산정되는 요금이다.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비용이 사용량이 오히려 적은 취사용에 더 많은 공급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취사용의 경우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기본요금도 다른 용도에 비해 높게 부담하고, 사용량과 관계있이 발생하는 사용량요금도 다른 용도에 비해 높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5) 불투명한 요금산정 체계

도시가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총괄원가에 추정판매량을 나누어 소비자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원가가 부풀려지거나 추정판매량이 축소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추정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는 부당한 요금을 내게 된 것이고 일부 사업자 역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과정에서 반영된 비용은 추정 금액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적용된 추정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요금산정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금산정이 영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요금산정 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비용은 배제하고 적정한 비용을 소비

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단지 사업자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운운하며 이득을 취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현행 체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판매량 통계에 있어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판매량 자료는 독자적인 자료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6) 계량기 관련비용의 기본요금 포함 문제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은 ‘계량에관한법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1년 2부제 요금이 도입되기까지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하여 왔고 이후에도 기본요금에 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최초 설치 시에 도시가스 계량기 전액 및 인입관 설치비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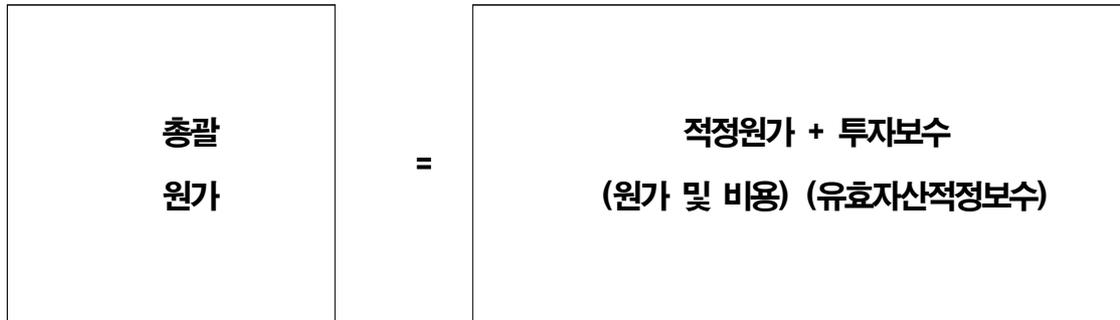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관리하거나, 교체시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2. 적정투자보수(이윤)의 적정성 문제

먼저, 현재 적정투자보수(이윤)를 산정하는 방식은 총괄원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총괄원가를 통해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산식에서 보듯이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총괄원가에는 도시가스회사의 적정투자보수(이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도시가스회사의 적정투자보수가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정투자보수: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

제공한 자본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보수로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상의 위험도가 반영된 투자자 기대수익에 상응

적정투자보수율: 자기자본 보수율과 타인자본 보수율의 가중평균

현재 적정투자보수(이윤)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투자보수의 산정방식 >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text{적정투자보수} = \frac{\text{유효자산금액의 합계}}{\text{(요금기저)}} * \text{적정투자보수율}$$

$$2006\text{년도 적정투자보수율} = 8.32\%$$

지금까지 알아본 현재의 적정투자보수(이윤)의 산정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체계의 불합리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투입되고 지출되는 모든 원가, 즉 총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하여 이를 가스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적정투자보수란 회사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일정한 보수, 즉 보상이익을 말한다.

이는 일반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이윤이 되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이윤이 적정투자보수라는 이름으로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적정투자보수의 산정이 적정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위의 산식에서 보듯이, 적정투자보수(이윤)의 크기는 결국 도시가스회사가 설정하는 적정투자보수율에 달려있는 것이다.

적정투자보수율을 회사가 높게 설정한다면 이는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적정투자보수의 산정방식을 보면, 도시가스회사가 투자한 자본, 즉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보수율을 먼저 산정하고, 이 보수율을 이들 자본을 통해 투자한 자산(유효자산)에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자본이나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회사의 자산을 형성했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 일정한 보수, 즉 이익을 회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타인자본, 즉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기자본, 즉 주주들이 내는 자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도시가스회사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타인자본(대출)에 대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만 지급이자를 통해서,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그 자산의 내용년수 동안에 걸쳐서 당해 자산에 투자된 금액은 모두 회수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타인자본인 대출금이나 자기자본인 주주의 자본금은 이로 인해 투자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자를 통해서 월가에 반영되고 있고, 이는 결국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된 자본에 대해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는 것이다.

즉, 회사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손실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시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한 이자나 원금 등이 모두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단지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보수만 필요한 것이다.

이 또한 투자된 자본의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정보수만 추구하면 될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적정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보수율의 경우 한국은행이 고시한 직전년도 1년이상 2년미만의 정기예금이자율에 2%가산(수도권의 외 지역의 경우 공급가구수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시 2% 추가)하고, 하한 6%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중의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으로 최소한 6%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가구수가 전국에 미달하면 더 많은 이익률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도시가스 수요가 적은 지방 시군일수록 더 많은 도시가스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자본보수율의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

에, 구조적으로 차입금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적정투자보수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기업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통해 기업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이는 결국 적정투자보수율을 인상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현재 회사가 추구하는 적정투자보수율(8.32%)은 높은 편이다.

적정투자보수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요금이 그만큼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고, 이는 회사의 순이익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적정투자보수율에 반영되어 있는 타인자본보수율은 제외되어야 하고, 자기자본보수율도 현재 정기에금이자에 대해서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투자된 자본금에 대한 손실 위험성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이중부담의 문제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평균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적정투자보수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으로 마련한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총괄원가에 의하면 당해 자산에 투자된 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투자자본이 전액 회수될 수가 있고,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로서 총괄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국 도시가스회사가 투자한 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전액 회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이중으로 원가를 계상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결국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 경영구조상의 문제

현재 도시가스의 공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기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매입하고 이를 공급관을 통해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건비 등은 모두 총괄원가에 포함되고, 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이윤)을 더하여 이를 해당 공급가구에 도시가스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경영의 효율성 문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회사는 순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원가절감이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회사가 추구하는 순이익을 도시가스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도시가스요금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원가절감이나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 없이 회사의 순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모든 원가는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인건비의 과다인상이나 원가의 과다지출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해 가스요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회사는

경영을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하더라도 항상 이윤이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경영난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도시가스회사는 투입되는 원가가 상승하건 인하하건 상관 없이 해당 원가에 회사에서 정한 이윤(적정투자보수)을 더해서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의 경영난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이 이러한 독점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중북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경쟁에 의한 배분상 효율보다 더 크다는 전제가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형태의 악영향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금산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국민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2) 경영의 투명성 문제

공기업의 부실은 상당부분 회계와 업무의 불투명성에서 나타나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경영의 효율화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경영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위하여 매출과 비용과 관련된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록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더 높은 회계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이는 도시가스공급서비스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성

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참여를 통한 요금산정, 정보의 공개 등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급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급비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공급비용을 검토하면서 회계법인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산정 자료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신뢰도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용역보고서 등 요금산정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때에 공개할 자료의 범위 및 공개방법 등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의 경우 많은 업무가 300여개의 지역관리소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어 지역관리소가 직접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요금에서 가스원가를 제외한 공급비용 중에 지역관리소에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의 약 20%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역관리소 운영비용의 약 60~65% 수준으로 지역관리소가 안전점검, 고지서발급, 계량기설치 등 대부분의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리소는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비, 출장비, 기

슬료, 자재비 등의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서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관리소를 도시가스회사가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는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직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 상승의 효과는 먼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후 요금상승요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도시가스요금 결정의 문제

소매요금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소매요금을 결정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공급규정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심의만 할 뿐 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급규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요금에 대한 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요금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요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업자와 지자체에 의해서만 요금을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거래조건 결정에 참가하는 권리를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첫째 청문회 및 공청회가 있다. 청문회 및 공청회의 기회를 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요금산정에 있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사람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민참여제도를 명문으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사기업 경영의 문제

현재 도시가스는 일반 사기업이 공급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현실에서 없어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재화가 된 것이다.

때문에 도시가스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 이에 대한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요금 부과에 있어 소비자가 요금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부과하는 대로 소비자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회사의 부당부과나 과다요금부과 등에 대해 소비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의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한가지 방안으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의 직거래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아서 공급관을 통해 해당 가구에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직거래 방식을 통하게 되면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만큼 공급원가가 줄어 들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는 지금 현실에서 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스 없이는 생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공공재를 사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다.

이윤추구를 하는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회사의 이윤은 가스요금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공공재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인상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 참고자료1<도시가스서비스개선을위한 토론회, 경실련 자료>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현황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황인호

I. 들어가는 말

도시가스공급체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5년 2월 도시가스요금산정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으나 단시일내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민원인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2006년) 제도개선 기획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서비스는 현재 도매업과 소매업이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소매업은 도시가스회사가 지역적으로 독점하는 독점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이 이러한 독점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경쟁에 의한 배분상 효율보다 더 크다는 전제가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형태의 악영향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금산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국민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사용국가이며,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11,543,000가구에 달하고, 보급률은 약 70%에 이르러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국민의 의식수준과 기대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질 높은 공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미 모든 정부부처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공기업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의 주체인 도시가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의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도시가스 공급 서비스 현황

1. 도시가스 공급체계

도시가스의 공급체계는 도소매업이 이원화되어 있고, 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소매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매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을, 소매사업자는 33개의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지역독점을 하고 있다²⁾³⁾.

따라서 도시가스는 해외 원산지인 생산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상태로 도시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고, 이를 기화하여 주배관망을 통해 발전회사 및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며, 도시가스회사는 기화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최종사용자인, 일반 가정·일반 사무실·일반 공장에 공급한다.

액화석유가스(LNG) 생산국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회사 → 최종사용자

전국에 도시가스회사는 현재(2006. 9.) 33개이며 이중 30개사는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업체이고 4개사는 LPG를 공급받는 업체이며(경북도시가스는 LNG 및 LPG를 모두 공급받음), 공급 원료를 천연가스(LNG)로 사용하는 30개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그 외의 4개의 도시가스회사(경북도시가스 포함)는 LPG를 원료로 직접 도시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한다(LPG/Air방식).

- 2) 이와같이 도시가스공급체계가 독점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은 도매사업의 경우는 수송선, 인수기지, 전국공급 배관망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장기계약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Take or Pay)해야 하는 계약조건의 경직성 등의 이유 때문이며, 소매사업의 경우에는 배관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3)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의 에너지산업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가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로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가스산업구조개혁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도입되더라도 과점적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여져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NG를 공급받는 발전회사는 발전자회사 5개사, 민자발전소 4개사, 자가소비용 발전사 1개사 합계 10개의 발전회사가 있고, 10개 발전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17개 이다.

《도시가스회사 공급권역별 분류》

광역지역	도시가스회사	회사수
서울	대한도시가스, (주)에스코,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5
경기	대한도시가스, (주)에스코, 서울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주)삼천리	6
인천	인천도시가스, (주)삼천리	2
강원	강원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4
충남	충남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3
충북	청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	2
대구.경북	대구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5
부산.경남	부산도시가스, 경남에너지(주), 경동도시가스, 신아도시가스	4
전북	전북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3
전남	전남도시가스, (주)해양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4
제주	제주도시가스	1

이러한 도시가스사업에 있어 도매사업자의 주된 사업내용은 액화천연가스 도입, 저장·생산시설 건설운영, 주배관망 건설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업무 하는 것이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역배관망 건설, 도시가스 최종사용자에 공급 및 안전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은 산업자원부가 관할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하고, 각각의 지도감독권한은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한편 안전유지 및 시공감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도 감독하고 있다.

《허가 및 업무 지도감독 권한》

구분	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	소매사업자(도시가스회사)
사업허가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관리감독관한	- 사업허가사항 이행여부 - 가스공급규정(요금, 공급 등)의 승인 - 가스공급계획 및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 도시가스 공급조건 및 공급권역 조정 등
안전관리 및 시공감리	한국가스안전공사

2. 도시가스 수요현황

1970년대 2차례 석유파동이후 탈석유정책에 의하여 공급을 추진되던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1986년 발전용으로 1987년 수도권 도시가스용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가스의 편리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청정한 연료 사용요구의 증대와 대기오염개선문제가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 4월 정부에서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전국배관망이 건설되어 도시가스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1982년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현재 33개사로 늘어났고 수요가구수도 1982년의 약 164,000가구에서 1990년 약 1,220,000가구로, 2005년말 현재 약 11,543,000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수요가구수/보급대상가구수) 또한 1990년에는 18.8%에 지나지 않았으나 전국적 공급기반이 마련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68%, 2005년말 현재 68.9%에 달하고 있고 2010년에는 77.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량 역시 1990년도 9억63백만㎥에서 2005년말 현재 172억 94백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차이가 심해 2005년말 현재 서울 95.3%, 인천 86.2%, 경기 77.2%, 대전 68.8%, 광주66.4%, 울산 66.5%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부산 53.4%, 대구 61.4%, 강원 48.1%, 충북 39.7%, 충남 29.4%, 전북 46.0%, 전남 43.2%, 경북 45.0%, 경남 46.6%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스 수요현황》

구 분	199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요가구수 (단위 : 천가구)	1,220	8,691	9,496	10,218	10,888	11,543
공급물량 (단위 : 백만㎥)	963	12,180	14,091	14,972	15,671	17,294
보급률(%)	16	61.5	63.9	66.5	68.0	68.9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2005년말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가구수	15,919,129	3,612,312	1,263,580	845,088	924,440	481,935	505,650	366,000
수요가수	10,966,459	3,443,879	674,337	518,973	796,438	320,109	348,131	243,509
보급률(%)	68.9	95.3	53.4	61.4	86.2	66.4	68.8	66.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가구수	3,749,239	309,438	494,000	641,403	578,926	416,560	757,526	868,077
수요가수	2,894,471	148,809	195,946	188,572	266,161	180,085	340,931	404,618
보급률(%)	77.2	48.1	39.7	29.4	46.0	43.2	45.0	46.6

3. 천연가스(LNG) 도입현황

천연가스는 2005년 현재 6개국에서 중장·단기 계약을 통해 연간 2,145만톤이 도입되고 있고, 2008년 이후 말레이시아, 러시아, 예멘으로부터 연간 약 550만톤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대규모 초기투자과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과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량조건, LNG 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었다.

4. 도시가스 요금현황

가. 도시가스 요금체계

도시가스요금은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적정보수방식에 따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하며,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공 서비스 생산자의 지속적인 기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요금을 가스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적정보수방식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적정보수를 가산한 것을 소요 수입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최종 사용자요금)을 나누어져 있다. 도매요금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하는 요금이며, 소매요금은 도시가스회사가 일반가정 등에 판매하는 요금이다.

나. 도매요금 산정 체계 및 현황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요금의 산정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배관시설이용요금 산정지침,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29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이다.

도매요금 중 원료비는 LNG 도입가격(도입선별 계약조건 및 유가·환율에 따라 산출), 도입부대비(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기타), 안전관리 부담금(3.9원/m³으로 도시가스용 판매물량에만 부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가스원료비연동제를 채택하여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원료비연동제(1998. 8. 1. 시행)란 천연가스의 도입 원료비, 즉 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원료비는 매 2개월마다 조정한다.

도매요금 중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급비용은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매년1회 조정한다.

<p>도매요금 ■ 원료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p> <p>원료비 ■ LNG 도입가격+도입부대비+안전관리 부담금</p> <p>공급비용 ■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p>
--

2004. 1. 1.과 2005. 1. 1. 도매요금을 비교해 보면 환율은 1달러당 1,183원에서 1,150원으로 하락하였으나, 유가가 29.62달러에서 38.74달러로 올라 원료비가 321.56원에서 368.54원으로 상승하여 도매요금에 394.08원에서 435.82원으로 10% 상승하였으며, 2005. 1. 1.과 2006. 1. 1. 도매요금을 비교해 보면 환율이 1달러당 1,150원에서 1,043원으로 하락하였고, 유가는 38.74달러에서 50.82달러로 상승하여 도매요금이 435.82원에서 475.31원으로 9%상승하였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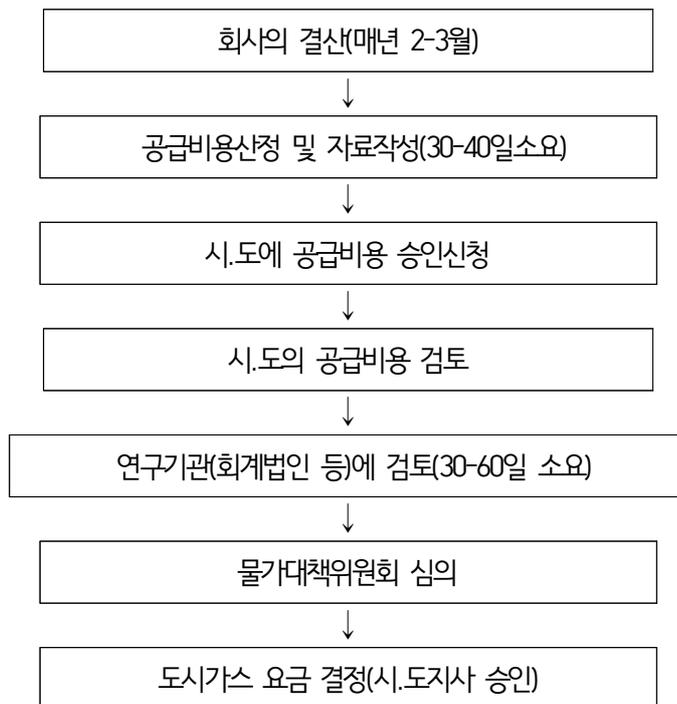
(단위 : 원/m³, 부가세 별도)

구 분	2004. 1. 1.			2005. 1. 1.			2006. 1. 1.			
	원료비	공급비용	계	원료비	공급비용	계	원료비	공급비용	계	
주택난방용	321.56	102.55	424.11	368.84	95.56	464.40	414.46	87.57	502.03	
일반용	321.56	39.95	361.51	368.84	37.94	406.78	414.46	35.01	449.47	
냉방용	321.56	-	227.87	368.84	-	242.59	414.46	-	297.37	
산업용	321.56	29.01	350.57	368.84	26.58	395.42	414.46	24.84	439.30	
열병합용				368.84	23.83	392.66	414.46	18.69	433.15	
열병합 및 집단에 너지용	동절기		71.79	393.35		71.67	440.51		65.84	480.30
	하절기	321.56	-	321.56	368.84	-	368.84	414.46	-	414.46
	기타월		29.01	350.57		26.58	395.42		24.84	439.30
평 균	321.56	72.52	394.08	368.84	66.98	435.82	414.46	60.85	475.31	
환율 및 유가	1,183원/\$, 29.62\$/bbl			1,150원/\$, 38.74\$/bbl			1,043원/\$, 50.82\$/bbl			

다. 소매요금 산정체계 및 현황

소매요금은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그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다. 소매요금은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공급비용 승인절차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승인절차》



도시가스 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주택난방용의 기본요금은 서울(840원), 충북(개별난방 1,111원), 전북(810원)이 높은 편인 반면 강원이 600원으로 낮은 편이었고, 주택난방 요금은 강원(674.32원), 전남(645.38원) 경남(646.62원)으로 높은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업무난방용의 경우 도 강원(675.23원), 전남(650.83원), 경남(655.71원)으로 높고 서울 등 수도권이 낮았고, 일반용(영업용1), 산업용, 열병합용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주택난방용		업무난방	일반용 (영업용1)	산업용	열병합용
	기본요금	주택난방				
서울	840.00	586.48	598.04	589.10	497.83	517.60
경기	790.00	591.87	602.35	593.85	510.81	504.66
인천	750.00	589.34	600.70	589.76	505.53	507.59
부산	750.00	634.12	649.87	597.31	516.31	533.43
대구	775.00	619.31	642.34	591.87	509.66	545.01
광주	750.00	636.44	632.85	605.44	516.64	535.44
대전	760.00	636.27	637.51	600.92	517.07	532.92
울산	778.00	624.91	625.55	575.51	530.16	527.18
강원(춘천)	600.00	674.32	675.23	618.49	605.64	600.55
충북(청주)	(개별난방) 1,111	629.97	641.14	572.64	535.53	522.43
충남(천안)	760.00	638.14	647.21	613.05	535.54	544.50
전북(전주)	810.00	626.75	633.84	581.28	532.46	546.14
전남(순천)	750.00	645.38	650.83	597.73	528.83	-
경북(구미)	750.00	613.63	616.32	563.76	540.74	544.43
경남(창원)	750.00	646.62	655.71	603.69	556.63	557.80

6. 지역관리소 현황

도시가스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역배관망 건설, 도시가스 최종사용자에 공급 및 안전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중 많은 업무를 지역관리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관리소는 약 300개가 있고, 이 지역관리소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관리소의 업무	
일반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침 및 고지서 송달 - 가스계량기 교체 및 성능 검사 - 가스요금의 책임 수납 - 고객의 전·출입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 영업용 공급중지 - 고객불만, 요구사항의 접수 및 조치 - 홍보, 안내문 배포
안전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정기적 안전점검 및 공급 -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의 설치 및 수리 - 사용자 시설의 공급전 안전 점검 -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물 배포

Ⅲ. 갈등요인

1. 수요자 측면

- 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도시가스공급서비스 질적제고 요구
- 나. 생활수준향상 및 전국 배관망 확보로 도시가스 사용 수요가 급증
- 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 인입관 공사비 부담 가중
- 라. 도시가스요금의 빈번한 인상에 대한 불신
- 마. 도시가스요금 산정체계의 불투명
- 바.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 등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불신

2. 공급자측면

- 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 (1) 유가급등으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 (2) 전국 배관망 및 저장시설 확충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필요
 - (3)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수입량 확보
 - (4) 현행 도매요금 산정체계 운영 신뢰
 - (5) 국제사회 변동에 따른 적정한 도매요금 산정필요
- 나.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 (1) 초기 막대한 공급시설 투자 및 회수기간 장기
 - (2) 지역배관망 확충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필요
 - (3) 지역관리소 직영 등에 의한 서비스 제고시 요금인상 요인 발생
 - (4) 소매요금 산정체계에 대한 신뢰
 - (5) 영업비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곤란

3. 지도감독자 측면

가. 산업자원부의 경우

- (1) 안정적 수급현황 유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 (2) 전국적.안정적 공급시설 확충 필요
- (3) 전국적 배관망 확충을 위한 지원 필요
- (4) 현행 요금산정체계에 대한 신뢰
- (5) 국민에 대한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제공
- (6)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합리화

나. 시.도지사의 경우

- (1)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2) 현행 요금산정 체계에 대한 신뢰
- (3) 주민에 대한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제공
- (4) 공정성 확보위한 용역기관에의 의뢰
- (5) 안정적 공급시설 확충
- (6) 도시가스회사 경영합리화

IV. 합리적 해결 위한 제언

1. 도시가스공급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필요

투명성의 개념은 일상생활용어이며 법적 또는 제도적 용어는 아니었으나 국민의 자율성의 확대, 민주화를 통한 국민참여의 확대 등에 힘입어 법적 용어로 확대되고 있다. 투명성의 이념은 공정성 및 신뢰보호의 이념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투명성의 확보는 사회경제적 및 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은 상당부분 회계와 업무의 불투명성에서 나타나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경영의 효율화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경영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위하여 매출과 비용과 관련된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록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더 높은 회계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이는 도시가스공급서비스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한 요금산정, 정보의 공개 등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2. 도시가스공급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시가스 공급서비스는 독점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악영향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도시가스 공급서비스는 공급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나, 계약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일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국민의 요구 수준향상으로 이제 비켜갈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가스 사업자는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인식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이전과 같은 고객에 서비스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의 경우 많은 업무가 300여개의 지역관리소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어 지역관리소가 직접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연결선 철거 및 연결에 의한 비용의 과다 징수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나타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관리소를 도시가스회사가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는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직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요인을 작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 상승의 효과는 먼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후 요금상승요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관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관리소가 사용자와 서비스 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3. 적극적 정보공개에의 필요성

도시가스요금산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환율과 유가에 대한 요금인상의 공개만 있을 뿐 이외에 도매요금산정기준, 도매요금 산정절차,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공개는 전무한 상태이고,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급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급비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공급비용을 검토하면서 회계법인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산정 자료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사업자에게 경영전반의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기 때문이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보고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자료이고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최종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판결(2004.4.30. 선고 2003구합5060)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가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다. 이와같이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도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역보고서 등 요금산정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때에 공개할 자료의 범위 및 공개방법 등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현재 도시가스요금의 산정체계를 보면 도매요금의 경우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소매요금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소매요금을 결정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시.도가 있는 등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공급규정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심의만 할 뿐 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첫째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급규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요금에 대한 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가스요금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요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있다.

5. 국민참여의 필요성

현재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도 최종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1) 생명과 건강의 권리, (2) 상품을 올바르게 특정하는 권리, (3) 거래조건의 결정에 참가하는 권리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중 거래조건의 결정에 참가하는 권리를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첫째 청문회 및 공청회가 있다. 청문 및 공청회의 기회를 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요금산정에 있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또한 둘째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사람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민참여제도를 명문으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스 판매량 차의 대처방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 경 암

1. 가스량의 측정과 차이 도시가스회사는 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구매할 때 가스 계량기에서 측정된 가스량을 0°C , 1013.15 mbar의 기준상태로 환산한 양을 구입한다. 2003년 연구용역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계량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비자(산업용,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으로 구분)에게 계량한 가스량을 0, 1013.15 mbar의 기준상태로 환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경우 계량한 가스량을 기준상태로 환산하지 않고 측정상태로 판매하고 있어 온도, 압력에 의한 편차가 발생한다. 가스 계량기의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상향 조정하여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계측오차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 토론에서는 가정용 가스량의 온압보정에 중점을 둔다.
2. 가스량의 정확한 산정-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오차 최소화: OIML 국제규격의 채택으로 국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가스 온도, 압력 보정 1) 상업용과 같이 온도, 압력을 보정하는 저렴한 온압보정기의 사용방안 2) 온압보정계수의 사용방안
3. 온압보정기의 개발현황국외에는 가정용으로 저가의 온압보정기를 개발한 사례가 없음 국내에 2개 업체에서 개발- A 업체는 8월 초에 실험결과 일부 온도영역에서 압력센서의 오류가 발생하여 9월 초에 재실험 예정- B 업체는 9월 말에 약 2,000 3,000개를 생산 예정이며, 생산제품을 실험예정임
4. 온압보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각 가정에 사용한 가스량의 정확한 온압을 보정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데 수년이 필요(5년 이상)
가정용 계량기는 검정에 합격을 해야 사용할 수 있어, 안전 및 성능 등의 법적 검정기준이 마련된 후에 보급
취사, 난방용에 온압보정기의 설치비가 소비자의 온압보정에 따른 가스요금의 조정액 보다 크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온압보정기를 설치를 고려해야 함
기능이 비슷한 산업용(2 - 4백만원)과 같이 방폭, 정확도가 요구되면 보정기의 가격이 상승
선진국에서도 가정용에 온압보정기를 사용한 사례가 없음

5. 온압보정계수(K)의 정의산업용이나 가정용(소형) 온압보정기와 온압보정계수의 계산방법은 같으나, 온압보정계수에서는 가스의 온도와 압력, 가스유량을 예상되는 평균 값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같은 값을 보정한다. 보정계수는 일별, 월별, 연간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연간 평균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정계수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아래식은 일 평균 보정계수이다.

Patm: 대기압, 기상청 자료 사용

Pgas: 2003년 연구용역 결과 22.46 mbar

Tgas: 용역결과 가스미터 주위온도와 거의 같음

-가스미터가 외부에 있을 때 기상청 자료사용

-가스미터가 베란다 내부에 있을 때 실내온도와

외기온도의 중간 값 사용(실험연구가 필요함)

q: 가스 사용시기별 가중치

6. 외국의 온압보정 사례미국 Northwest Natural Gas Company (Oregon, Washington 주)- Rule 24(Oregon), Rule 11(Washington): 열량의 결정 기준상태 : 14.73 psia, 60 F 보정계수 = 측정된 체적 * 압력계수 * 온도계수 * 압축계수압력계수 = [가스압력(psig) + 14.73 * 대기압계수 * 고도계수]/14.73 psia 온도계수 = 520 / (가스온도 + 460) : Oregon, 8개 기상관측소 데이터 사용기상청에서 측정된 외기 온도를 가스온도로 가정하고, 고도에 따른 가스 압력을 보정하여 온압보정계수를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독일: G-685 : 가스정산 규정 기준상태 가스량 = 측정상태의 가스량 * $\frac{T_n}{T} \frac{P_{atm} + P_{eff}}{P_n} \frac{1}{K}$ 기준상

태: Tn = 0 °C, Pn = 1013.25 mbar 대기압 = 1016 0.12 * 높이(m). mbar, 가스온도 = 15 °C 가스온도는 15 °C, 대기압에 고도 영향을 포함하여 매년 같은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7. 가정용 가스소비량의 패턴(가중치)

모델 패턴이 없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시간대별 가스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천연가스 수요패턴 분석 자료집(한국가스공사)의 몇 개를 추출하여 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여 온압보정계수를 계산한 결과 큰 차이는 없어 이 자료집에서 A 도시가스사의 월 최소 공급 패턴이 가정용 소비패턴과 유사하여 이 패턴을 서울, 부산에 적용하여 온압보정계수를 계산하였다.

8. 수도권, 남부권의 온압보정계수 계산결과

가스온도로 기상청 온도 데이터를, 가스압력은 기상청 대기압 데이터에 2003년 실험데이터 인 가스압력 22.46 mbar를 더고 A 도시가스사의 공급패턴을 사용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0.04 0.84% 정도(0.32, 0.28, 0.84, 0.76, 0.78, 0.04 %)가 온압보정의 영향 이 있었다고 예측되며 남부권의 경우 1.06 1.82% 정도(1.65, 1.82, 1.82, 1.55, 1.6, 1.06 %)가 온압보정의 영향이라고 예측된다.

수도권

	1	2	3	4	5	6	
2000년	1.0324	1.0311	0.9952	0.9864	0.9494	0.9390	
2001년	1.0386	1.0245	0.9974	0.9685	0.9440	0.9289	
2002년	1.0191	1.0124	0.9896	0.9673	0.9482	0.9299	
2003년	1.0322	1.0118	0.9974	0.9686	0.9445	0.9309	
2004년	1.0287	1.0201	0.9973	0.9865	0.9477	0.9396	
2005년	1.0313	1.0308	1.0046	0.9678	0.9484	0.9270	
	7	8	9	10	11	12	연평균
2000년	0.9142	0.923	0.9333	0.9671	0.9879	1.0201	0.9968
2001년	0.918	0.9231	0.9348	0.9604	0.9963	1.0285	0.9972
2002년	0.9177	0.9276	0.938	0.9725	1.0067	1.0184	0.9916
2003년	0.9237	0.9289	0.9397	0.9689	0.9883	1.0206	0.9934
2004년	0.9213	0.9228	0.9318	0.9672	0.9817	1.017	0.9932
2005년	0.919	0.9259	0.9382	0.9679	0.9898	1.0385	0.9996

남부권

	1	2	3	4	5	6	
2000년	1.0083	1.0098	0.9864	0.9795	0.9514	0.9461	
2001년	1.0124	1.0022	0.9822	0.9645	0.9453	0.9340	
2002년	1.0025	0.9994	0.9808	0.9667	0.9537	0.9366	
2003년	1.0131	0.9995	0.991	0.9682	0.9548	0.9360	
2004년	1.0124	1.0048	0.9897	0.981	0.9514	0.9457	
2005년	1.014	1.0139	0.9945	0.9677	0.9526	0.9350	
	7	8	9	10	11	12	연평균
2000년	0.9214	0.9229	0.9314	0.9562	0.9725	0.9971	0.9835
2001년	0.9199	0.9212	0.9352	0.9547	0.9816	1.0083	0.9828
2002년	0.9244	0.9299	0.9392	0.9611	0.991	1.0012	0.9818
2003년	0.9355	0.9306	0.9364	0.9613	0.9768	1.0043	0.9845
2004년	0.926	0.9269	0.9342	0.9622	0.9735	0.9973	0.9840
2005년	0.9264	0.9261	0.9369	0.9606	0.9806	1.0193	0.9894

9. 온압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 가능

아주 작은 비용으로 온압 보정을 실현

실시간 가스 사용량, 가스 온도, 압력이 온압계수 사용에 적용한 값과 각 가정별로 +/- 차이가 있지만 작을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영국, 독일, 네델란드, 미국 등)에서는 온압보정계수에 해당하는 보정을 하고 있음

10. 진행중인 연구용역

가정용 온압보정기 2개사의 제품 유량실험

가스 계량기- 실외 설치된 경우: 기상청 온도, 압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압보정계수 산정-
실내 (아파트 베란다 사시 안)에 설치된 경우: 서울, 경기 지역 100개소의 가스 계량기 온도를 수집하여 외기온도와 상관 관계 분석예정, 이 평균온도를 사용하여 온압보정 가능함

불투명한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대 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I. 문제제기 및 배경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한 필수 에너지이다. '물가안정에 의한 법률' 제4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결정·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 도시가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가스는 199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급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의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회나 소비자단체, 언론 등에 의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나 언론 호도용 정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산자부는 판매량차이에 의한 부당이득과 불투명한 요금산정 문제의 대안 책으로 2부제 요금의 도입, 원격검침기의 보급, 도시가스 고객센터 현장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연체료 계산 방식 조정,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빠져있었고 실제 약속한 대표 정책 중 원격검침기의 개발·보급 등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지역 독점과 이윤을 보장 받고 있음에도 공익적 성격을 망각하고 경영혁신이나 서비스향상 노력보다 이윤 추구에만 치중하였다. 특히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할 산자부나 지자체가 본연의 임무를 배임하고 사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산자부나 지자체, 사업자들이 보여준 부당이득 해소와 요금산정 관련 대안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다. 산자부나 사업자들 역시 웬만한 문제제

기에 무반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자부나 지자체, 사업자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 만큼 도시가스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불신은 감사청구나 소송 등의 형태로 나타나, 결국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 지적 후 7년이 지난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여전히 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회전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과 불투명한 요금 산정체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산자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재점검되고 사업자의 공적 서비스 역할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주요 소비자단체의 도시가스 관련 활동내용>

단 체	일 시	내 용
참여연대	2001. 2.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 관련 부당이득 환급소송
군산경실련	2001. 4.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하 운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003. 10.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환급 운동
대구경실련	2003. 11.	요금과대계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아파트사랑시민연대	2006. 4.	대구도시가스 부당이득반환 집단 청구소송
경실련	2006. 4.	도시가스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한국아파트연합회	2006. 6.	도시가스 특별소비세 탈루 혐의 검찰고발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2006. 8.	도시가스 부당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추진

II. 도시가스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체계의 한계

현행 요금체계는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특정연구기관이나 회계법인의 용역을 거쳐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요금산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시가스의 가격이나 산출근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하고 공정하게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자부나 지자체는 요금산정의 근거나 요금산정 내역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업자와 지자체에 의해서만 요금을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요금산정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행 요금산정체계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요금에 반영시키고 있다. 요금산정을 적정하게 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이나 회계법인의 용역 외에는 산정된 요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용역 역시 특정기관이 오랜 기간 연구용역을 독점하고 있고,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산출근거나 내역이 전혀 기술되지 않거나 매년 동일한 내용에 수치만 바뀌서 작성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요금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는 지자체가 외부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확인 결과 외부감사기관을 지정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셋째, 물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물가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아예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요금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일부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 되어있다.

도시가스 부당이익 문제와 요금산정 체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상 수시로 자리를 바꾸게 되어 결국 도시가스 사업자의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일부 공무원들은 용역보고서의 내용 검증은 고사하고 내용파악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불투명한 요금산정 체계

1) 추정 소요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의 미정산 문제

도시가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총괄원가에 추정 판매량을 나누어 소비자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원가가 부풀려지거나 추정판매량이 축소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지난 4월, 2004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와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반영된 추정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451억 원 적게 지출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경실련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지자체가 공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요금산정 시 승인된 추정 소요비용과 실제 사용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20.35% ~ +11.81%로 많은 편차를 보였다. 참고로, (-)는 추정비용보다 사업자가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는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였다는 의미이다.

결국 추정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는 부당한 요금 내게 된 것이고 일부 사업자 역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지자체가 공개한 2001년~2005년 지역별 추정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의 차이 >

(단위 : 천원)

지 역	추정 소요비용	실제 사용비용	차이	비 율
서울시	955,675,000	자료 없음		
경기도	513,423,000	512,688,000	735,000	0.14%
인천시	223,338,000	217,765,000	5,573,000	2.50%
대구시	148,783,000	165,220,000	-16,437,000	-11.05%
대전시	125,160,000	118,698,000	6,462,000	5.16%
울산시	104,855,505	102,400,373	2,455,132	2.34%

부 산 시	171,179,062	179,746,113	-8,567,051	-5.00%
광 주 시	106,616,742	104,543,478	2,073,264	1.94%
경상남도	142,115,920	135,891,284	6,224,636	4.38%
경상북도	118,324,673	142,398,166	-24,073,493	-20.35%
충청남도	98,817,240	109,533,235	-10,715,995	-10.84%
충청북도	54,559,613	51,864,092	2,805,521	5.13%
전라남도	48,836,294	50,672,155	-1,835,861	-3.76%
전라북도	127,074,557	112,062,919	15,011,638	11.81%

특히, 서울특별시는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다른 모든 지자체의 자료공개와는 달리,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 자료가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요금을 승인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가 그 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명백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별 도시가스사업자를 보면, 서해도시가스는 추정 소요비용이 13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272억 원을 사용한(-109.46%)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라벌도시가스는 추정 소요비용이 102억 원에 불과함에도 390억 원을 사용하여 추정 소요비용대비 무려 -284.45%를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군산도시가스와 익산도시가스는 각각 22.84%와 23.51%에 해당하는 68억 원과 76억 원을 추정 소요비용보다 적게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과정에서 반영된 비용은 추정 금액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추정비용과 실제 사용비용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요금산정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금산정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요금산정 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비용은 배제하고 적정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단지 사업자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운운하며 이득을 취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현행 체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엉터리 판매량 통계자료 문제

도시가스 실제 판매량은 소비자요금을 산정하는 추정판매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가 공개한 도시가스 실제 판매량 통계자료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 사업자의 실제 판매량 자료 >

(단위 : 천m³)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산 자 부	12,689,939	13,871,590	14,737,574	15,409,377
지 자 체	12,690,163	13,911,333	14,742,478	15,420,160
도시가스 사업자	12,728,953	13,944,056	14,774,239	15,456,552

이는 산자부의 판매량 자료, 공시된 도시가스 사업자의 자료, 요금산정 시 적시된 판매량 자료가 도시가스 회사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것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가스 회사가 용도에 따라, 유리한 판매량 자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소비자요금을 엉터리로 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산자부나 지자체가 오히려 도시가스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라서 모르겠다는 한심한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통계자료를 잘 못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와 관리가 엉터리이고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지자체 공개 판매량과 실제 요금반영 시 적시된 판매량 >

(단위 : 천m³)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
서울특별시	4,257,279	4,257,279	4,431,202	-	4,511,198	4,510,829	4,582,179	-
인천광역시	1,093,695	1,093,695	1,208,142	1,208,132	1,274,603	1,274,603	1,294,986	-
경 기 도	2,798,121	2,798,267	3,116,887	3,116,879	3,362,143	3,362,164	3,551,376	-
광주광역시	284,628	293,787	326,970	318,136	363,569	342,051	393,244	363,385
대구광역시	671,985	-	726,601	726,600	769,433	769,433	804,713	804,713

※ 참고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 - 2002년도, 2004년도 서울특별시 / 2004년도 인천광역시 / 2004년 경기도 / 2002, 2003, 2004, 2005년 광주광역시 / 002, 2003, 2004,

2005년 대구광역시

더욱 큰 문제는 실제 소비자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적시된 실제 판매량과 지자체에서 공개한 실제 판매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매량이 축소되었다면 요금산정 시 반영되는 추정판매량 역시 축소될 소지가 큰 것이다. 만약 추정판매량이 축소되어 계상되었다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3.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산자부가 공개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11,127,909천m³을 구입해 112,084,512천m³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량보다 956,603천m³를 더 판매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판매량 차이가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대구 지역의 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 계량기와 온압보정기의 차이가 8.1%였다. 그러나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는 겨우 0.73%에 지나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판매량 차이가 기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차이 역시 계량기 오차(±2.25%) 이내라는 법적 타당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지난 5월,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법률전문가들은 산자부가 제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가 도시가스 판매량차이를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으며(75.5%),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익은 부당이득(79.5%)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83.3%)라고 답변하였다.

법적 타당성	응답	비율(%)	이득	응답	비율(%)	내용	응답	비율(%)
타당하다	19	14.4	부당이득이다	105	79.5	환급해야 한다	110	83.3
타당하지 않다	100	75.8	부당이득이 아니다	19	14.4	환급할 필요 없다	11	8.3
판단을 유보한다	13	9.8	판단을 유보한다	8	6.1	판단을 유보한다	11	8.3
합계	132	100.0	합계	132	100.0	합계	132	100.0

경실련 조사결과로 인해 그 동안 산자부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주장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더 이상 설득력과 명분을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나 도시가스 사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산자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점검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과 도시가스 요금정책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결정과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문제나 불투명한 요금산정, 영터리 판매량 통계자료 등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산자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산자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오히려 사업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산자부는 지난 4월에 판매량 차이가 계량기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판매량 차이를 개선하지 않고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산자부가 과연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는 도시가스 서비스체계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판매량 통계자료 기준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 요금산정 실태파악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대로 된 요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제기된 문제들

1) 계량기 교체비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은 '계량에관한법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1년 2부제 요금 도입되기까지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하여 왔고 이후에도 기본요금에 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2) 계량기 최초 설치비 및 인입관 설치비용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최초 설치 시에 도시가스 계량기 전액 및 인입관 설치비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관리하거나, 교체 시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나 주택 입구까지 수도물을 공급하는 '간선(幹線)배관' 설치 비용을 수도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수도의 간선배관이 도시가스의 인입배관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도시가스 인입관도 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교체 계량기의 승인문제

신품 계량기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엄격한 검정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낡고 오래된 기존 계량기는 오히려 형식적인 승인 검정을 거쳐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03년 3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미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0.8%로 편향되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 기간이 종료된 계량기의 검정 시 신품 계량기처럼 내구성 조사 등 엄격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지역관리소 배분문제

일반적으로 소비자요금에서 가스원가를 제외한 공급비용 중에 지역관리소에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의 약 20%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역관리소 운영비용의 약 60~65% 수준으로 지역관리소가 안전점검, 고지서발급, 계량기설치 등 대부분의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리소는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비, 출장비, 기술료, 자재비 등의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서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지역관리소가 상생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매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솔선하여 지역관리소에 적정하게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불투명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체계개선을 위한 제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가스회사들의 추정소요비용과 실제사용비용 차이로 인한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그리고 영터리 통계자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근거자료를 도시가스 협회나 회사에 의존하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투명한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철저한 요금검증체계를 도입하라.

지난 2005년 4월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정기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요금산정 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에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 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자부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정기적인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나 용역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참여를 법제화하라.

다. 이는 결국 불투명한 요금산정의 문제와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요금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요금산정 절차상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참여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요금 조정 시 외국에서처럼 요금산정 절차상에 근거자료와 내용의 공개를 명문화하고 최종 요금 결정시에 공청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요금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사업자들은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추정소요비용과 실제소요비용의 차이를 정산하라.

현행 요금산정 시스템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추정소요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산정 시 철저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추정비용과 실제비용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이를 정산하여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철저하게 구입량과 판매량 자료를 관리하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통계자료는 요금산정의 기초자료이다. 만약 기초 통계자료가 왜곡된다면 소비자요금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는 구입량과 판매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업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철저한 관리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산자부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부당이득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자는 스스로 해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산자부는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장·단기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부당이득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소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불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부당이득 해소와 요금산정 체계의 개선요구는 더욱 커 질 것이 명확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가 더 이상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요금산정체계를 합리화 시켜줄 수는 없다. 소비자들은 도시가스의 가격보다는 투명하고 적정하게 요금이 산정되기를 희망한다. 이제라도 산자부, 지자체, 사업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소비자,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가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참고자료2<청주도시가스 기본요금에 대한 질의서, 2006.12.13 충북참여연대>

民 충북참여 자치시민연대

361-1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전화 267-0151~2 팩스 264-7257 담당 : 김주복 부장
홈페이지 www.citizen.or.kr 이메일 citizen@citizen.or.kr

문서번호 : 참여자치 2006 - 50
시행일자 : 2006. 12. 13.
수 신 : 청주도시가스 대표
참 조 : 요금책정담당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 전국에서 가장 비싼 청주도시가스 기본요금에 대한 질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청주도시가스 기본요금에 대한 질의서

지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환 의원에 의해 쟁점화 되기 시작한 청주도시가스 요금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도시가스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 산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청주도시가스는 원가상승과 기반시설투자, 지역난방의 확대로 높은 기본요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회계결산자료를 분석해보면 원가 산정 시 임직원의 상여금이 1130%가 반영되는 등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청주도시가스는 지난해에도 7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도시가스의 원가 산정 방식과 기본요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왜 청주시민들이 동일한 조건의 타 지역 주민들 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에 대

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청주도시가스측이 지금이라도 과도하게 높은 도시가스기본요금의 인하방안을 제시하여 서민경제 불황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질의를 보냅니다.

1. 현재 청주도시가스의 요금산정방식은 평균사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방식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과도 맞지 않는 제도로 사회적 공공성을 띤 사기업이라는 기업 스스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요금산정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용량이 적을수록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이유가 가스배관 투자비 및 감가상각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이상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타 지역보다 최고 3,900원이나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보면 서울 840원, 인천 750원, 광주 750원, 원주 600원, 목포 750원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600~800원대인데 청주시의 경우 기본요금 부과방식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취사전용 4,500원, 개별난방 1,111원, 기타 1,572원, 충주시의 경우 취사전용 2,750원, 개별난방 1,750원, 기타 1,750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청주시와 충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기본요금이 비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요금은 월등히 높는데 비해 사용 요금도 타 지역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기본요금이 타 지역 도시가스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도 불구하고

고 사용요금까지 높게 책정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기본요금이 높으면 사용요금이 낮아야 형평에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청주시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취사용 686.85원, 난방용 678.37원으로 서울 부산 수원 경기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2중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도시가스 가격결정을 좌우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도 전국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공급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주 도시가의 평균 공급비용은 m³당 84.09원으로 판매량이 많은 광역시 등 대도시 보다는 높지만 지방사 평균 공급비용인 98.42원(전국평균 88.42원)보다는 낮게 공급되고 있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이루어진다면 청주시의 도시가스요금은 타 지역보다 낮아야 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 높게 부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청주도시가스의 높은 요금, 낮은 서비스 정신이 지역난방의 확대 원인입니다.

청주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가 지역난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지역난방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진 이유가 신규 택지와 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이 지역난방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 할 수 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난방에 비해 높은 공급비용과 낮은 서비스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결과라 생각합니다.(기존 아파트조차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사례가 이를 말해줍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에서 난방방식을 변경한 세대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익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거부하여 주민이 대형 가스통을 묻어 공동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지금이라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지금이라도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정상화하여 도시가스회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한 인하조치를 단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청주도시가스의 최근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총수입대비 감가상각비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1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참고자료2<2000. 감사원 지적내역>